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기간 10년 연장〉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51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 기간 연장	3

I.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3. 검토의견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이하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0년 연장하여 20년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u>10년간</u>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 ----- ----- ----- ----- ----- ----- ----- ----- ----- ----- <u>20</u>

현행	개정안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년간 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과 같이 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 합의, 생산자 단체 의견 수렴,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전 직불제도의 시행기간을 FTA 발효 후 10년으로 정한 것이었고, 수입 개방으로 인한 특정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동 제도를 통해 FTA 시행 초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는 의견임.

【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의견수렴 실적 】

□ 한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희망농업포럼(총 11차)

□ 주요 농업인단체 간담회('14.5.16.)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심의('15.5.19.)

- 참석자(15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농축산연합회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주)지역농업아카데미 대표, 한국감정평가협회 고문,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어업인등 지원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2008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도 뿐 아니라 시설현대화, 유통지원, 품질개선사업 등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는 것임(총 7건, 계획액 38.4조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에 지원이 집중되어 농업인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종료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제도 시행 이후 총 23개 품목(중복지원 9개), 415,392농가를 대상으로 2,10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상위 7개 품목(돼지, 송아지, 감자, 노지·시설 포도, 한우, 블루베리)에 총 지원액의 93.6%인 1,968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함.

특정 작물이나 품목에 지원이 집중되어 농업인의 품목 다변화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임.

-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¹⁾에 따른 폐업지원제도 역시 종료 시기가 도래한 2021년에 종료된 바 있으므로 제도 연장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음.

【 폐업지원제도 추진 경과 】

구분	기존제도 (’04)	’07년 대책 (’07.11.)	종합대책 (’11.8.)	추가대책 (’12.1.)	한중대책 (’15.6.)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대상 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 지정 (모든 시설 투자 품목)			
시행 기간	’08.12.31. 종료	한·EU FTA 발효 후 5년 (2016.6.30. 까지)			한·중FTA 발효 후 5년 (15.12~2012.)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2020.3.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보완대책 중 품목별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즉, 현행법에 따라 제도를 종료하는 한편,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익직접지불제도 확대, 정책보험 확충 등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²⁾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2024.9.27.

동 계획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대책으로 마련한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은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하여 기초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수준 인상)하고, 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등 정책보험을 확대하여 자연재해 및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 발생 시 일정수준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따라서 수입으로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도입될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임.

2) 관련 단체 의견(전국농민회총연맹)

□ 2024년 10월, 전국농민회총연맹³⁾은 <2024년 국정감사 전국농민회총연맹 4대 요구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을 요구한 바 있음.

3) 전국농민회총연맹(全國農民會總聯盟, 약칭 전농)은 1990년 4월에 창립되어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전국의 농민 조직을 총괄하며, 농업 정책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농민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4)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연 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1	칠레	1999.12.	2003.2.	2004.4.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2	싱가포르	2004.1.	2005.8.	2006.3.	ASEAN 시장 교두보
3	EFTA (4개국)	2005.1.	2005.12.	2006.9.	유럽시장 교두보
4	아세안 (10개국)	2005.2.	2006.8. (상품무역협정)	2007.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5. (서비스협정)	
			2009.6. (투자협정)	2009.9. (투자협정)	
5	인도	2006.6.	2009.8.	2010.1.	BRICs 국가, 거대시장
6	EU (27개국)	2007.5.	2010.10.6.	2011.7.1.(잠정) 2015.12.13.(전체) 2011.7.1. 이래 만 4년 5개월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09.3.	2011.3.21.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06.6.	2007.6.	2012.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1. (개정협상)	2018.9.24. (개정협상)	2019.1.1. (개정의정서)	

연 번	상대국	추진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			
9	튀르키예	2010.4.	2012.8.1. (기본협정-상품 무역협정)	2013.5.1. (기본협정-상품 무역협정)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2015.5.26. (서비스-투자협정)	2018.8.1. (서비스-투자협정)	
10	호주	2009.5.	2014.4.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05.7.	2014.9.22.	2015.1.1.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2.5.	2015.6.1.	2015.12.20.	우리의 제1 교역국 (2022년 기준)
13	뉴질랜드	2009.6.	2015.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2.8.	2015.5.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15	콜롬비아	2009.12.	2013.2.21.	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 (5개국)	2015.6.	2018.2.21.	2021.3.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진출
17	영국	2017.2.	2019.8.22.	2021.1.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2012.11.	2020.11.25.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16.5.	2021.5.12.	2022.12.1.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캄보디아	2020.7.	2021.10.26.	2022.12.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21	인도네시아	2019.2.	2020.12.18.	2023.1.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발효된 FTA 체결현황>

FTA 체결 20년차인 202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 총수출액 89억 7천만 달러, 총수입액이 436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약 6%씩 증가하였음⁴⁾.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음⁵⁾.

정부는 신규 FTA를 체결하거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2007년 한·미 FTA 체결⁶⁾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7년으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시행 기간 연장을 계획한 바 있음.

이후 2011년 한·EU FTA 추진 시에는 가격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시행 기간을 협정 발효일('11.7.1.)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하였음⁷⁾.

2015년에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생산 품목도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높은 국가로서 제도 시행기간은 협정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연장되었음.

4) KREI농정포커스 제223호,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2024.4.16.

5) 한·칠레 대책('04.3.) : 키위, 시설포도 2개 품목을 사전지정하고, 가격이 평년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 지원('04~'10), 2010년 말까지 시행

6) 한·미 1차 대책 ('07.11.) : 가격기준을 조수입기준으로 변경, 대상품목 사전지정을 사후지정으로 변경, 지급단가의 보전비율을 85%로 상향, 피해보전직불 시행 기간 연장

7) 한·EU 여야정합의('11.5.) : 다시 가격기준으로 변경, 가격 발동요건 완화(80% → 85%), 지급단가 보전비율 상향(85% → 90%), 사업 시행 기간 연장(협정 발효일('11.7.1.)로부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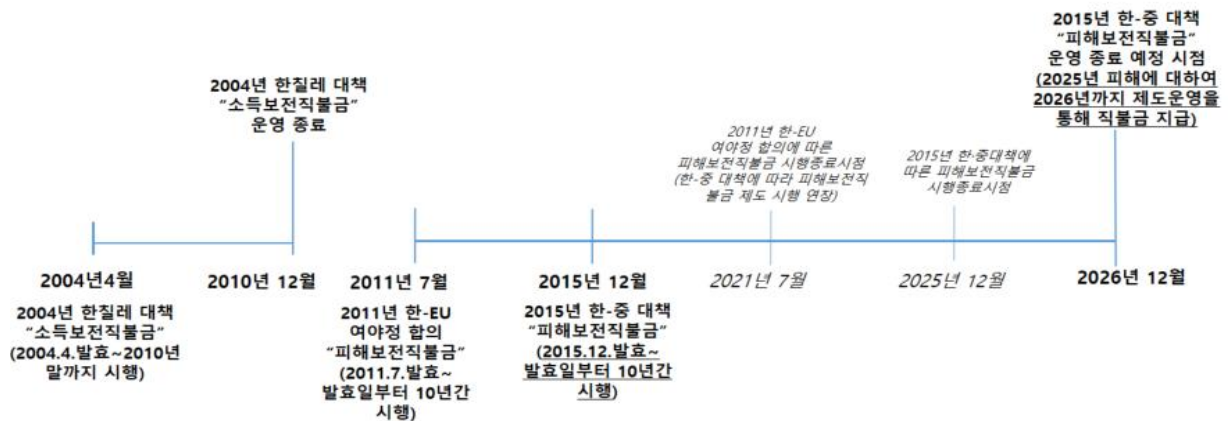
【 FTA 피해보전직불 추진 경과 】

연 번	구 분	발동기준	보전 비율	보전 기준	대상품목	시행기간	기타
1	한·칠레 대책('04.3.)	해당연도 가격이 평년가격* 80% 미만으로 하락	가격 차액의 80%	가격	사전지정 (키위·시설 포도)	'10.12.31. 종료	-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4. 1. 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의 시행기간) <u>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시책은 2010년 말까지 시행한다.</u>				
2	한·미 1차 대책 ('07.11.)	-	가격 차액의 85%	조수입	사후지정 (모든 품목)	협정 발효 후 7년	-
3	한·EU 여야정합의 ('11.5.)	85% 미만으로 하락	가격 차액의 90%	가격	-	발효일 ('11.7.1.)로 부터 10년	-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u>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u>」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0.22. 시행)				
4	한·미 여야정합의 ('11.10.)	90% 미만으로 하락	-	-	-	-	지급 상한 설정
5	한·영연방 대책('14.9.)	-	-	-	-	'24년까지	-
6	한·중 대책('15.6.)	-	-	-	-	발효일 ('15.12.20.) 로부터 10년	대상품목 이의제기 절차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u>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u>」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				

연 번	구 분	발 동 기 준	보 전 비 율	보 전 기 준	대 상 품 목	시 행 기 간	기 타
		<u>한다.</u> (2017.1.17. 개정)					
7	한·중 여야정 합의 (‘15.11.)	-	가격 차액의 95%	-	-	-	수입기여도 검증 및 이의제기 절차
	현재기준	당해 가격이 기준가격 90% 미만으로 하락	가격 차액의 95%	가격	사후지정 (모든 품목)	한·중 FTA 발효일 (‘15.12.20.) 로부터 10년	지금 상한, 대상품목·수 입기여도 이의제기 절차 운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10.24. 제출)

【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기별 추진 경과 】



□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는 품목은 매년 ① 품목별 총수입량 ②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③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선정됨⁸⁾.

【 지난 10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별 지원 현황 】

연도	품 목	지급단가(원/ha, 마리)	농가수(호)	면적/마리수(ha/마리)중량(ha/ton)	지급금액(천원)
2014	수 수	127,474	1,264	610	80,312
	감 자	1,270,814	27,938	11,329	15,903,836
	고구마	8,570	1,165	508	4,628
	송아지	46,923	87,106	345,480	16,370,778
소 계		-	117,473	-	32,359,554
2015	대 두	469,200	24,548	13,130	6,161,049
	감 자	2,142,850	24,435	10,827	23,314,430
	고구마	45,300	1,316	624	32,443
	체 리	2,600,640	98	55	144,658
	멜 론	141,300	1,325	758	107,498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연도	품 목	지급단가(원/ha, 마리)	농가수(호)	면적/마리수(ha/마리)중량(ha/ton)	지급금액(천원)
	노지포도	1,133,670	19,867	9,670	10,974,753
	시설포도	3,512,600	3,309	1,573	5,521,624
	닭고기(ton)	19,090	191	45,523	842,886
	밤	419	585	1,867	783
소 계		-	285,404	-	94,398,874
2016	당 근	98,970	849	1,054	104,589
	노지포도	1,166,530	20,320	9,831	11,127,366
	시설포도	3,236,280	3,693	1,560	5,113,407
	블루베리	15,671,600	3,443	8,664	22,160,736
소 계		-	233,682	357,317	64,638,796
2017	도라지	1,730,300	1,480	838	1,450,230
2018	호두	1,022,741	2,213	1,643	1,680,254
	도라지	63,855	118	68	4,372
	귀리	1,957,878	188	628	1,228,908
	양송이	5,810,218	366	33	195,020
	염소	1,062	843	122	129,507
소 계		-	258,230	-	314,051,291
2019	귀리	270,000	148	569	153,701
	목이버섯	6,002	28	45,332	322,091
소 계		-	176	-	475,792
2020	녹두	60,818	725	408	24,806
	밤	663	177	654	442
	돼지고기	6,321	3,261	11,682,970	60,933,040
소 계		-	30,367	-	15,988,776
2021	귀리	739,746	203	833	615,987
2023	생강	316,680	907	356	112,66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10.24. 제출)

☐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됨.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 】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식) 생산면적·출하 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법 제83조항)
 - * (상한액)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5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 (예산) ('19년) 1,000억원 → ('20~'22년) 200 → ('23년) 180 → ('24년) 5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10.24. 제출)

□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들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음⁹⁾.

9)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낙두 58.7%로 산출됨.

- 참고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2조 3,459억 원이며, 그중 89.1%인 37조 7480억 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1조 4,292억원이며, 정책품목별 경쟁력 제고(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에 경쟁력 제고)가 1조 890억원(76.2%), 근본적 체질 개선(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 동력창출)이 3,313억원(23.2%), FTA 직접피해지원이 89억원(0.6%)으로 나타남¹⁰⁾.

- 한편,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집행률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예비비적 성격을 지니며, 당년도 사업은 전년도의 수입 피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 시점에서 직불금 지급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과 폐업지원 품목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임.

10) KREI농정포커스 제223호,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2024.4.16.

2020년에는 예산 200억 원 대비 직불금 지급규모는 630억원(이·전용 등 430억원 포함)으로 예산을 초과한 집행률을 보인 반면, 2022년에는 지급요건 충족 품목이 없어 예산 200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됨.

【 지난 10년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4	100,478	△33,258	67,220	40,346	-	26,874	60.0
2015	100,478	△12,270	88,208	49,524	-	38,684	56.1
2016	100,478	△60,392	40,086	40,086	-	-	100.0
2017	100,478	-	100,478	3,276	-	97,202	3.3
2018	100,478	-	100,478	5,067	5	95,406	5.0
2019	100,000	5	100,005	1,015	34	98,956	1.0
2020	20,000	43,009	63,009	63,009	-	-	100.0
2021	20,000	-	20,000	706	-	19,294	3.5
2022	20,000	-	20,000	-	-	20,000	0
2023	18,000	-	18,000	332	-	17,668	1.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10.24. 제출)

☐ 개정안은 2025년 12월 20일 폐지가 예정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제도 운영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교역적자¹¹⁾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인 데다 2020년 체결되고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¹²⁾의 영향과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¹³⁾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여지가 있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일몰에 따른 폐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¹⁴⁾.

- 2024년 10월, 전국농민회총연맹¹⁵⁾은 <2024년 국정감사 전국농민회총연맹 4대 요구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11) 교역적자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은 상황

12) RCEP은 2020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고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음.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며,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13)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으로, 2018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14)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감사(2024.10.24.) 시 전종덕의원 질의요지 :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집행률이 낮고, 관세 철폐가 연속해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15) 전국농민회총연맹(全國農民會總聯盟, 약칭 전농)은 1990년 4월에 창립되어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전국의 농민 조직을 총괄하며, 농업 정책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농민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일몰 연장을 요구한 바 있음.

- 종합하면,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소득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